공직선거법 위반

[광주지방법원 2012. 6. 27. 2012고합283,393,394,395(각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최대건(기소, 공판), 양동훈(기소, 공판), 조은수(기소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로컴 외 7인

【주문】

1

- 1.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- 위 피고인으로부터 5,000,000원을 추징한다.
- 위 피고인에게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- 2.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- 3.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처한다.
- 4. 피고인 4를 징역 3년에 처한다.
- 5. 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처한다.
- 6. 피고인 6을 징역 2년에 처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